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61

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김영배·이학영·조승래

한준호 • 손명수 • 김동아

김태선 • 이정문 • 이훈기

권칠승 · 민병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,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 다면,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6(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)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의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 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6제1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가

이루어진 가해학생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6(상급학교 진학 시 학
	교 배정) ① 교육감 또는 교육
	장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
	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
	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
	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
	를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
	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
	선적으로 배정한다.
	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7
	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
	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학
	급교체의 조치가 이루어진 가
	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
	에 진학할 때 해당 피해학생의
	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
	학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
	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
	<u> 여야 한다.</u>